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85
----------	-------

제출년월일 : 2020. 5. .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아동 관련 정책(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감시·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 수행 등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감시·평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및 안 제12조의2)
-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페슨의 위촉·운영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3)
- 아동친화도시추진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아동에 대한 참여권 보장 (안 제24조 제2항)

□ 개정조례안 : 별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별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별임3

- 아동복지법 제2조, 제4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3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별임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0. 4. 13.(월) ~ 5. 4.(월)(22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불임 1 >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이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 옴부즈피슨” 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 · 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아동영향평가” 란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 ·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 · 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 ·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시민·전문가 등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아동권리 옴부즈페슨 위촉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아동권리 옴부즈페슨을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옴부즈페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4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구제 등의 경험이 많은 사람

3.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

4.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등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옴부즈페슨은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 구제, 모니터링 및 개선안 등을 제안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페슨을 명예직으로 위촉하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아동권리 옴부즈페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해 촉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4조제2항 중 “20명”을 “4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여성가족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여성가족과장 이 경숙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아동친화팀장 김 혜정
	담당자 성명 · 전화	박 소영 (행정 2308)

< 불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2. (생 략) <u>〈신 설〉</u>	1.·2. (현행과 같음) 3.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이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u>〈신 설〉</u>	4. “아동권리 옴부즈피슨” 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u>〈신 설〉</u>	5. “아동영향평가”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u>〈신 설〉</u>	제11조의2(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현 행	개 정 안
	<p><u>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u></p> <p><u>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 정 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 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 외할 수 있다.</u></p> <p><u>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 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 항</u></p> <p><u>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 행이 불필요한 사항</u></p> <p><u>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 항</u></p> <p><u>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 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 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u><신 설></u>	<p><u>제12조의2(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실 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 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 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 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 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 링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아동 · 시민 · 전문가 등으 로 모니터링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 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에 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u><신 설></u>	<u>제12조의3(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u>

현 행	개 정 안
	<p>및 기능 등) ① 시장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아동권리 옴부즈피슨을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p> <p>② 아동권리 옴부즈피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4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구제 등의 경험이 많은 사람 3.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 4.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등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③ 아동권리 옴부즈피슨은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 구제, 모니터링 및 개선안 등을 제안 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피슨을 명예직으로 위촉하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아동권리 옴부즈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p>
<p>제24조(아동위원회 구성) ① (생 략)</p> <p>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u>20명</u> 이하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 ⑤ (생 략)</p>	<p>제24조(아동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40명</u>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